



[2015.7.1.] [12873 , 2014.12.30.,]

() 02 - 2110 - 2784

2

5 2(.)

[2014.12.30.]

18 (.)

6 2 1

.< 2011.3.9., 2013.3.23., 2014.12.30.>

.< 2011.3.9.>

4

.< 2008.2.29., 2011.3.9.,

2013.3.23.>

.< 2011.3.9.>

25 ()

2

.< 2011.7.21.>

1. 9 1

(22 1

1

)

2. 14 1

가

1

.< 2011.7.21., 2014.12.30.>

1. 8 1

(22 1 1

)

2. 15 2

3. 18 2

4. 18 4

500

.< 2011.3.9., 2014.12.30.>

1. 5 2 1

2. 6 1

6 2

3. 6 2 1

4. 10 2
5. 10 2 1

6. 15 2
7. 16 1
1 3

< 2008.2.29., 2013.3.23.>
<2011.3.9.>
<2011.3.9.>
<2011.3.9.>



[2014.1.1] [25050 , 2013.12.30,]

() 02 - 2110 - 2784

17 (.)

18 2 .

가 .

. < 2011.9.9 >

1. 7 2 2

2.

1 .

. <

2008.2.29, 2013.3.23 >



[2013.12.31] [14 , 2013.12.31,]

() 02 - 2110 - 2784

9 (.) 17 1
.
18 3 1 . < 2011.9.9 >
가
. < 2011.9.9 >

2

[별표 1] <개정 2011.9.9>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9조제1항 관련)

교육 과정	교육 대상	교육 시간	교육 내용
1. 정기 교육·훈련	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2.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·훈련	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(계약직 포함)	8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
	대학·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·대학원생 등)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•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특별안전 교육·훈련	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비고

정기교육·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.